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83
----------	------

2017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7. 8. 14.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7. 8. 16.
3.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복지본부 김용복 본부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3조의2 본문 중 기금의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함.(안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규제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법령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법적 근거인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 기간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2년 12월 31일 ----- ----- ----- ----- -----.

-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되어 집행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p> <p>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생략)</p>

2 계정별 운영 현황 및 존속 필요성

- 사회복지기금내 노인복지계정의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노인계정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영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000	337	832	△495	14,503	364	852	△488	

※ 예치금 및 예치금 회수 제외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노인빈곤율은 47.7%로 OECD 평균 12.1%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 어르신 계층을 특정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다른 기금 사업 및 일반 회계 사업은 제한적인 바, 노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본 기금의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 사회복지기금내 장애인계정의 기금 운용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장애인계정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영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3,310	3,287	1,636	1,651	24,961	2,077	3,715	-1,638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무이자)과 공모를 통한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용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된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용자성 사업인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사업은 회수된 용자금이 다시 지원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자성 사업인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일반회계전입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회계나 기금 등에 중복사업이 없고,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금 유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사회복지기금내 자활계정 기금운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000	605	535	70	11,070	5,461	6,310	△849	

※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 제외

- 본 기금의 자체수입 비중은 주요 지출대비 35.9%로 낮은 편에 해당하나,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용자성 사업비는 순환하여 다시 상환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운용 규모와 지출일정, 시중금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기금사업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비융자성 사업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 기금의 설치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며, 다른 회계나 기금 대비 중복사업이 없고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개정안에 대한 평가

- 2015년 4월 국회에서 개정되어 7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같은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기금 설치를 억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종전에 같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같은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일몰제(5년)을 강화하였음.¹⁾

- 같은 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기금이 남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지방의회가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금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검토한건데, 각종 기금운용이 방만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을 재원으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의회가 견제하기 어려운 기금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음.
- 금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의 지속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노인계정, 장애인계정, 자활계정 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을 평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무엇보다 기금 운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시장 이자율의 저하로 인해 이자수입 확대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기금 설치 예산운용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사업으로써 집행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1)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은 2015년 12월 삭제되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3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2. 주요내용

- 제3조의2 본문 중 기금의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규제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법령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7. 6. 22. ~ 7. 12.) 결과: 별도 붙임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개정인 경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2년 12월 31일</u>----- ----- . ----- ----- ----- ----- .</p>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의2 본문 중 기금의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이광훈(2133-7325)